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소개

한 종 현 과장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동물방역부 동물보호과

최근 규모화·계열화 등 축산업이 선진화됨에 따라 생산성이 높아져 일반 국민들이 보다 저렴하게 축산식품을 섭취할 수 있게 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밀집사육과 공장식 축산이 일반화 되었고 그 결과 동물복지 수준은 매우 열악해졌으며, 항생제 과다 사용, 축산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특히 동물복지가 고려되지 않은 열악한 사육환경 하에서 FMD, AI 등 악성 전염성 질병이 급속도로 확산되어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입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동물복지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내외적으로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농장동물 복지 정책의 하나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건강, 환경, 식품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동물복지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0년 5월 (구)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실시한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4명중 3명 정도(72.3%)는 축산물을 구입할 때 쾌적한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덜 받고 생산된 것을 구입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우 그렇다 26.2% + 너무 비싸지만 않다면 구입하겠다 46.1%), 구입 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5.8%에 불과했다.

또한 대부분의 응답자(93.7%)는 축산물을 구입할 때 동물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방식으로 자랐는지에 대해 소비자로서 알 권리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소비자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제도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이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란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동물을 사육하는 농장에 대해 국가가 인증하는 것으로, 동물의 건강관리, 사육시설 및 환경 등에 관한 동물복지 인증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여 농장동물의 복지 수준과 더불어 축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인증 농장에서 사육되고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운송, 도축된 동물로부터 생산된 축산물에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소비자는 인증마크만 보고도 손쉽게 윤리적 소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영국의 프리덤푸드 등 외국에서는 동물복지 축산 민간 인증이 대부분이지만 동물복지 관련 시설, 인력, 예산, 의식이 부족한 우리나라 실정상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의 정착기까지는 국가기관에서 제도를 설계·운영하여 제도의 신뢰성 및 실효성 확보하고자 한다. 이는 본 제도가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을 경우, 동물복지 인증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가 저하하여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의 법적 근거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10995호)이 지난해 8월 4일 공포되어 본 제도는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인증된 축산농장에 대하여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축사 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 동물복지 축산농장 환경개선 및 경영에 관한 지도·상담·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인증을 받은 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특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인증받지 않은 농장을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표시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을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 지자체, 축산단체, 동물보호단체는 동물복지 축산농장의 운영사례를 교육·홍보에 적극 활용하도록 의무화하여 인증 받은 농장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의 인증 주체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며, 소, 돼지, 양, 닭, 오리농장을 대상으로 하나 현실성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축종별로 단계적으로 추진코자 한다.

이에 따라 2012년 2월 5일부터는 우선 산란계 농장부터 인증을 시작하고 인증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에 대해 인증마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후 돼지는 2013년, 육계는 2014년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인증절차는 서류검사, 전문 인증심사원에 의한 현장인증심사 2단계로 이루어지며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중 일반기준과 축종별 개별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도입을 위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2010년 3월부터 ‘동물복지 산란계농장 기준 마련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본 TF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국립축산과학원, 축산물HACCP기준원, 동물보호단체, 협회, 학계 등 관련 전문가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를 통해 ‘동물복지 산란계농장 인증기준안’을 마련하고 있다.

인증기준에는 사육밀도 기준, 산란상·횡대 및 깔짚 제공 의무화, 닭의 건강 상태 점검 등

의 내용이 포함되며 관행 배터리 케이지 사육방법이나 강제환우,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 사용은 금지된다.

인증기준 중 일반기준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으로, 축종별 개별 기준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로 만들 예정이며 인증기준(안)은 붙임과 같다.

끝으로 보다 많은 농가가 동물복지에 관심을 갖고 본 제도에 참여하여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가 동물복지 증진, 축산물 품질 향상, 소비자 만족도 제고, 농가 소득 증

대 등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하기를 희망한다. <img alt="bird icon" data-bbox="715 198 748 214"/>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실시 요약**

- 추진배경 : 국내외적인 동물복지 수준 강화 추세 및 동물복지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관심 증가
- 주요내용
  - ① 인증축종 : 2012. 2. 5일 산란계를 시작으로 돼지(2013년), 육계(2014년) 등으로 확대 예정
  - ② 인증기관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 ③ 인증기준 : 축종별 관리방법, 사육시설 및 환경 기준 등
- ※ 농림수산검역검사 본부 고시 제정 예정(2012. 2월)
- 시행일 : 2012. 2. 5.

**[붙임]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기준(안) - 일반기준**

1.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가. "관리자"라 함은 동물을 사육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축산농장 관리를 직접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농장의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자를 말한다.
  - 나. "자유방목"이란 축사 외 실외에 방목장을 갖추고 방목장에서 동물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일반 기준
  - 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의 등록을 한 농장이어야 한다.
  - 나. 농장 내 동물이 전체적으로 활기가 있고 털에 윤기가 나며, 걸음걸이가 활발하며, 사료와 물의 섭취 행동에 활력이 있어야 한다.
  - 다. 관리자는 사육하고 있는 동물의 복지와 관련된 법과 규정 및 급수, 환기, 보온, 질병 등 관리방법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 라. 관리자는 동물의 생리적 요구에 맞는 적절한 사양관리로 동물의 불필요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면서, 항상 인도적인 방식으로 동물을 취급하고 질병 예방과 건강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마. 수의사의 처방에 따른 질병 치료 목적을 제외하고, 사료 및 음수에 항생제·합성항균제·성장촉진제 및 호르몬제 등의 동물용의약품을 첨가하여서는 안 된다.
  - 바. 질병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하고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하여 수의사의 처방 및 감독 하에 치료용 동물용 의약품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동물은 해당 약품 휴약기간의 2배가 지나야 해당 축산물에 동물복지축산농장 표시를 할 수 있다.
- 사. 관리자는 검역검사본부에서 주관하거나 교육전문기관에 위탁한 동물복지 규정과 사양 관리 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원격 교육도 포함한다)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하며, 해당 농장에 동물과 직접 접촉하는 고용인이 있을 경우 교육 내용을 전달하여야 한다.
- 아. 검역검사본부 또는 인증심사원이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자. 농장 내에서 동물복지 사육 방법과 일반(관행) 사육 방법을 병행하여서는 안 된다.
- 차. 다른 농장에서 동물을 입식하려는 경우 해당 동물은 동물복지 인증 축산농장에서 사육된 동물이어야 한다. 다만, 이를 확보할 수 없는 때에는 이유 직후 또는 부화 직후의 가축인 경우(원유생신용·알생신용 동물의 경우 육성축 및 성축 입식 가능)에 한하여 일반 농장에서 사육된 가축을 입식할 수 있다.
- 카. 동물복지 자유방목 농장으로 추가 인증 받고자 하는 자는 실외 방목장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